서울 남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9가단4094 면책확인의 소

원 고 이〇〇

피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
담당변호사 박○○, 허○○, 김○○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〇〇

변 론 종 결 2019. 4. 30.

판 결 선 고 2019. 5. 28.

주 문

- 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의 피고에 대한 40,571,13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기본 법리

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,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·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.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7, 10, 12, 선고 2017다 17771 판결 참조).

- 2.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
 - 가.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.
- (1)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(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******)에서, 2018. 5. 25. '원고는 피고에게 40,532,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(이하 '종전 판결'이라 하고, 종전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권을 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.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- (2) 원고는 2018. 11. 8. 면책 결정을 받았다(서울회생법원 2018하면****).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.

나. 피고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므로, 원고는 종전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해 집행력 배제를 구함이 옳다. 이 사건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[설령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더라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(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), 이 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없다]

3. 결 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현곤